

#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

1998. 12. 24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17일
-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-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(1998. 12. 2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유의재)

가. 제안이유

관계법령의 개폐 및 위원회 통·폐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결정사항중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유사위원회 기능의 통합에 따라 항목은 추가·삭제하고 별표로 분리된 위원회 기능을 본문의 결정사항에 포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

< 소멸·중복기능 삭제 >

- 10억원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기능 삭제  
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중복)
- 유통산업 근대화시책 심의기능 삭제(관련법령 폐지)
- 화전정리 심의기능 삭제(기능소멸, 법령폐지 계류중)

< 신규기능 추가 >

- 행정규제 심사기능 추가(행정규제기본법 신설)
- 민원조정기능 추가(민원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이관)
-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기능 추가  
(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이관)
- 보안심사 및 공무원국외여행 심사기능 추가  
(위원회 기능대행)

○ 자구의 일부수정

- 기획관리실 → 기획조정실, 업무담당사무관 → 기획담당사무관
- 도조정위원회 → 도정조정위원회

○ 간사장과 간사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간사로 통일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동 응)

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
이는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부

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기능의 중복·소멸된 10억이상 소요예산사업의 투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유통산업 근대화 추진을 위한 시책등의 심의 및 화전정리 심의기능은 삭제하였고 공무원 국외훈련 및 공무국외여행심사, 민원조정 및 보안심사,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련사항은 새로 신설하였으며

또한 도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, 업무담당사무관을 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하는등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대비표